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개선 등 개정 필요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 복무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
  - 임신검진휴가 분리 신설(제23조제3항)
  -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기준 완화(제23조제5항)
  - 유·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제23조제11항)
  - 남성공무원에 대한 배우자 유·사산휴가 일수 조정(제23조제12항)
-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개선
  -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 확대(제23조제14항)
- 기타 상위법령 단순 반영 및 문구 정비 등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249-2540
    - 팩 스 : 033-249-4022
    - 이메일 : dreampop@korea.kr

### 4. 참고사항

-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개정안, 신규조문대비표)

2020년 2월 5일

강 원 도 지 사

##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7일 이상인”을 “연 6일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2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을 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23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⑫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제1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제14항제2호 중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을 “재직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병가) ①·② (생략)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1조(병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연 6일을 초과하는</u> -----.
제23조(특별휴가) ①·② (생략)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u> -----.
④ (생략) ⑤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 <u>2명</u> -----.
1. 2. (생략) ⑥ ~ ⑩ (생략)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을 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 -----.
1. 유산이나 사산한 공무원의 임	<삭 제>

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하인 경우 : 유산이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하인 경우 : 유산이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경우 : 유산이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생략)  
⑫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5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⑬ (생략)  
⑭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  
-----

2. -----  
----- 이내-----

3. -----  
----- 이내-----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⑫ ----- 제 1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 있다.

⑬ (현행과 같음)  
⑭ -----  
-----  
-----  
-----  
-----  
-----.

##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2. ----- - 20일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⑮ (생략)	⑮ (현행과 같음)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강원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와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법령에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합부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19. 3. 8.>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7. 8. 4.>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입어야 한다.

② 공무원증의 발급, 휴대 및 폐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9. 3. 8.>

**제14조** 삭제 <2010. 10. 29.>

**제15조** 삭제 <2010. 10. 29.>

**제16조** 삭제 <2010. 10. 29.>

## 제2장 휴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9. 3. 8.>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8조의3** 삭제 <2019. 3. 8.>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이나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에 따른 공무원외의 국외여행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삭제 <2019. 3. 8.>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 3. 8.>

② 삭제 <2019. 3. 8.>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 제22조 삭제 <2019. 3. 8.>

**제23조(특별휴가)**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일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도지사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015. 1. 2.>

③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⑤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⑦ 삭제 <2005. 12. 30.>

⑧ 삭제 <2005. 12. 30.>

⑨ 삭제 <2005. 12. 30.>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을 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이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이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이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제1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모

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017. 8. 4.>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⑮ 도지사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4조** 삭제 <2010. 10. 29.>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삭제 <2005. 12. 30.>

**제26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2005. 12. 3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